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통보서
(정기)

장 기 요 양 기 관 명	주식회사 제천사회서비스센터	장 기 요 양 기 관 기 호	34315000068
급 여 종 류	방문요양	대 표 자	양금숙
평 가 년 도	2016	평 가 등 급	절대 A

구 분	총 점	기관운영	환경및안전	권리및책임	급여제공	제공결과	가점
환산점수 (배점비중)	105.00	21.00	8.00	27.00	31.00	13.00	5
점 수	**90.25**	**19.50**	**8.00**	**24.00**	**25.50**	**12.25**	**1**
전체평균	80.46	16.29	6.75	21.17	23.52	12.32	0.39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에 의해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를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2. 가산지급일까지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등급이 조정될 수 있으며, 가산지급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 수시평가 실시기관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음

2017년 5월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사 장